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6월 2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3년 7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국장 오상균)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명시한 존속기한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운용하고, 기한만료 후 존치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22 호
----------	---------

제출연월일 : 2013.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안 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5.30 ~ 6.19,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미반영)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를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탁”을 “예금 위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에 한”을 “용도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제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자로”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4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마다”를 “회계연도”로 하고,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8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매회계년도마다”를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요항목인 장·관·항의”를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개정2007.04.05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 ----- ----- -----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u> ----- ----- -----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 <u>각 호의</u> ----- -----		
1.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u>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u>현행과 같음</u>		
②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u>계리하여야 한다.</u>		②----- <u>회계 처리하여야</u> -----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u>이자율이</u>		③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u>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 3. (생략)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청장이라 한다)-----

-----.

④-----
----- 예금 위탁-----
-----.

제4조(기금의 용도) -----
- 용도에 한정-----.

1. ~ 3. (현행과 같음)
4. -----
----- 그 밖의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2.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5. 그 밖에 -----

② ----- 1명 ----- 10명 -----
-----.

③----- 건설국장-----

-----사람으로-----.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에서 -----

3. 토목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생략)

제6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사
 랍-----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수당 등) -----

- 범위-----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회계연도마다-----

----- 80일 이내에 -----
-----.

② ----- 제1항에 따라 -----
----- 회계
연도마다 -----
-----.

③ -----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

-----.

제8조(준용) -----

- 대해서-----
-----.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
-----.